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
【2022. 11. 23.(수) 1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1월 23일
전문위원 배 금 택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2 - 125
-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2년 11월 7일
- 라. 회부일자: 2022년 11월 11일

2. 제안이유

-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원회 성별 구성 조항 및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규정 등을 명문화하여 위원회 구성 및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강서구 고도지구 폐지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3조)
- 나.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활동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원회 성별 구성 조항을 추가함
(안 제7조)
- 라. 위원회 회의 참석 위원·전문가 등에게 수당 지급 규정을 명문화함
(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항시설법」 제34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 해당 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2. 9. 28.~10. 18.) 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기획예산과):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원안 동의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관련 조문의 통합 및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 개정내용

○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3조)

- 고도지구 폐지¹⁾에 따라, “장애물 제한표면, 항공학적 검토²⁾”의 용어 정의를 관계법령에 맞게 신설하고, “공항 고도제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등의 용어를 이에 맞게 정비하여 정의함.

○ 구청장의 책무에 주민활동 지원 사항 신설(안 제4조)

○ 주민활동 지원(안 제5조)

- 공항고도제한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³⁾, 교육, 항공학적 검토 등 지원 사항을 명시함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33호(2019.4.2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 폐지

□ 결정(변경) 사유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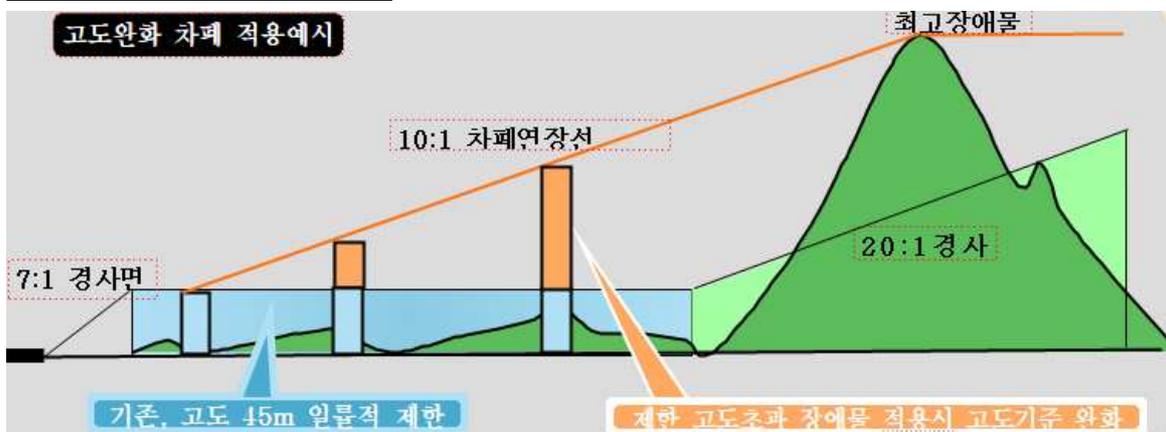
지구명	면적(m ²)	변경 사유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80,193,000	- 「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 고도제한과의 중복규제 해소를 위하여 용도지구 폐지

2)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14. “장애물 제한표면”**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지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항공학적 검토**”란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절차 등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계획된 검토 및 평가를 말한다.

3) **고도제한 완화 적용(차폐 적용)**

기준장애물(제거하기 곤란한 인공·자연장애물(철탑, 산 등))을 기준하여 장애물제한표면을 초과 하더라도 활주로 방향 전면은 하방경사도 1/10 경사면으로 하며, 측면·후면은 기준장애물 높이 아래 까지 구조물이나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는 방법



○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조문의 통합 및 정비

(안 제6조~제9조)

-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양성 평등기본법」 제21조4) 따라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신설

(안 제7조제1항)

- 위원회 회의의 참석수당 지급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9조제2항)

◆ 위원회 관련 조문의 통합 내역 ◆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5조(위원회 명칭)	제6조(위원회 명칭 및 기능)	통합
제6조(기능)		
제7조(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용어정비 사항 등을 포함하여 조문 통합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제10조(분과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3조(경비 등 지급)	제9조(위원회 지원)	

4)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지원 활동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문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회복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해당 주민활동지원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⁵⁾에 규정된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5)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
다.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공항시설법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제4조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한다)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한다) 이후에는 해당 고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구조물(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은 제외한다)·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6.>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과 협의하여 설치 또는 방치를 허가하거나 그 공항 또는 비행장의 사용 개시 예정일 전에 제거할 예정인 가설물이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의 경우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결과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⑨ 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청하여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그 검토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학적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